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변화를 고려한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긴급지원 〉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50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영향평가 고려	2
2.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위기 긴급지원	7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3.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에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영향평가 고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¹⁾을 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u>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 ----- ----- ----- ----- -----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u>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 및 그 밖의 지리적·자연적</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라 함)²⁾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³⁾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⁴⁾

최근 58년간(1968~2025년) 한국 해역의 표층수온은 약 1.6℃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갱이·삼치·방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음.⁵⁾

2)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연간 어획총량을 제한하여 적정 수준의 어획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어획량 관리제도로, TAC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수산자원량 범위 내에서만 어획하게 하여 자원을 보호·관리함과 동시에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임. TAC를 적용받는 어선은 연간 어획총량 중 일부를 배분받게 됨(TAC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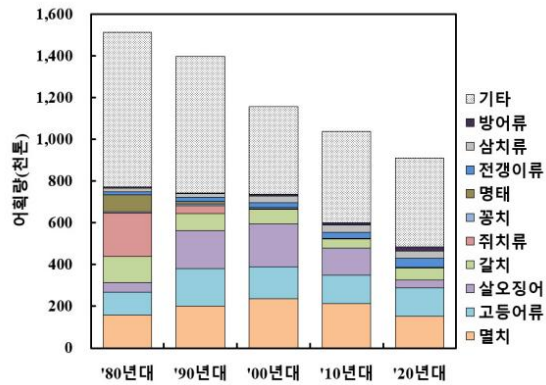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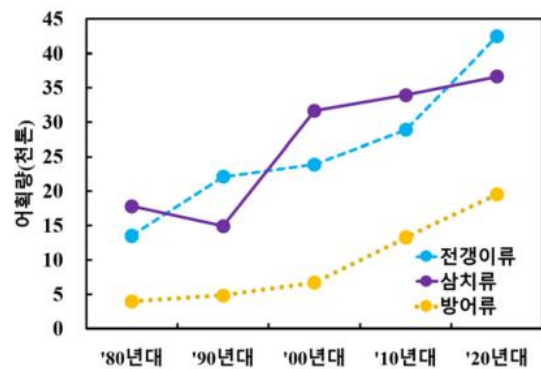
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2026」, 2022.9.

< 연근해 어종 어획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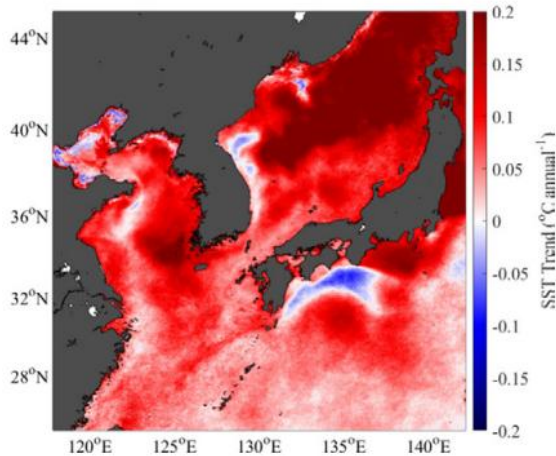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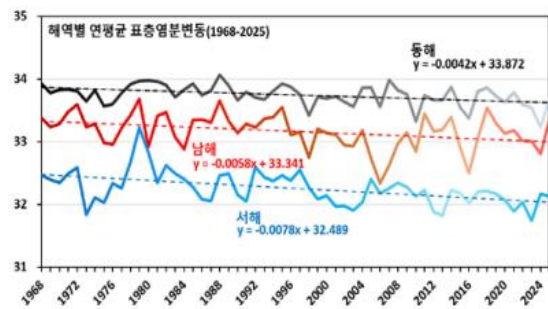
< 난류성 어종 어획량 변화 >



< 최근 10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 상승률 >



< 1968~2025년 해역별 표층염분변동 >



주: 표층염분 감소는 기후위기 지표 중 하나로, 표층염분이 감소되면 표층과 하층의 밀도 차이가 커져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 성층 현상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 상승을 가속화함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생물학적 조사 자료 및 어획 통계 등 과거 패턴에 의존하고 있는 TAC 설정 방식은 미래 수산 자원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해, 서해, 남해 및 연안·근해별로 수온 변화율, 염분 밀도 등 주요 기후위기 지표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해역에 과도하게 규제가 쏠리거나 자원이 남획되

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TAC 설정 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⁶⁾의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을 TAC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이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데이터의 정책 반영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⁷⁾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재해 예방

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시책 수립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⁸⁾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 정합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결과와 지역적 특성을 TAC 설정 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임.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 긴급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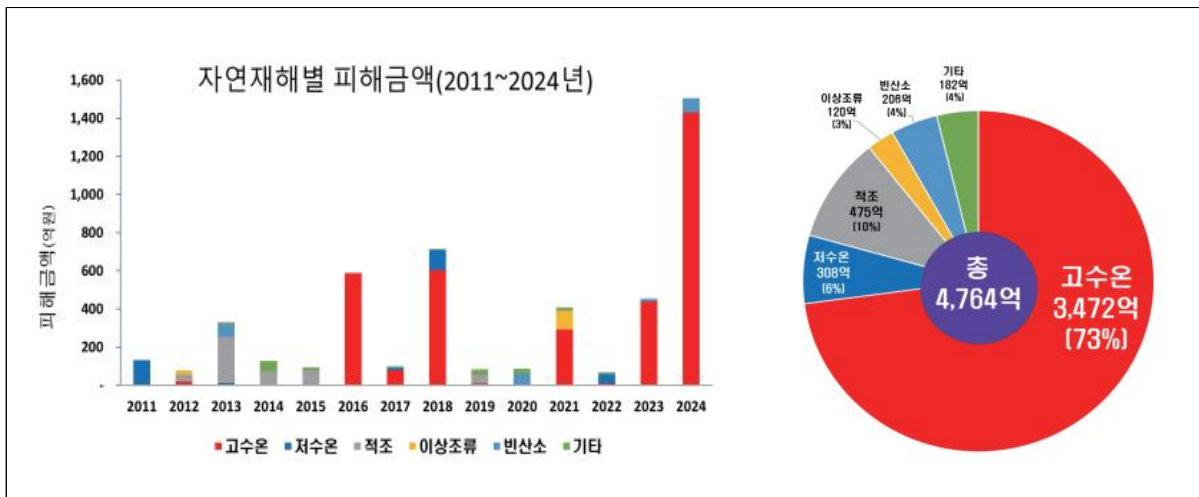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긴급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 연간 151만톤에서 2020년대 약 92만톤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⁹⁾, 이는 어촌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또한 최근 14년간(2011~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4,763억원) 중 고수온 피해가 3,472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등 기후변화는 어업생산성 저하와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연재해별 피해금액 >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 2025」, 2025.

개정안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수급안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

9)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 2026」, 2026.

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어업 기반 유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및 법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을 고유 목적¹⁰⁾으로 하는 자원관리 규제 법률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제2장),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및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제3장),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제4장 및 제5장)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에 대응하여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지원이나 피해구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자연에서 직접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¹¹⁾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해수면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¹²⁾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12) 내수면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3조제5호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지자체로부터

개정안의 취지가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의 어업이나 인공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기르는 양식업 등 현행법의 규율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분야까지 포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의 적용영역 및 범위 등과 정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법체계상 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수산업법」¹³⁾에 따른 포괄적 보조금 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¹⁴⁾ 및 「농어업재해대책법」¹⁵⁾에 따른 재난피해 구제 및 재해복구비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경영안정 지원 등이 있음.¹⁶⁾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13)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지원요건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이상수온, 이상조류 등 재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의 근거가 되나 직접적·물적 피해 외에 어획량 급감 등 간접적 경영 손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수산업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포괄적 수산경영 및 구조개선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특화된 긴급 경영지원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비교 >

구분	수산업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안
적용 요건	행정관청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태풍, 홍수, 폭염, 조류 대발생, 조수) 발생 시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유해야생동물 등에 따른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시설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	수산업 전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어업인 포함) 및 지자체	어가 전반	어업경영체 전반	어업인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적용범위에 따르면 양식업·내수면어업)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구분	수산업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안
					에는 미적용)
주요 지원 수단	-수산경영지원 -어업구조조정사업 등	-응급구호비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수산종자대 금, 어업용시 설 복구비, 정 책자금의 상 환연기 및 감 면, 입식비 (入殖費)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 동에 따른 인 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수산업 여건 이 낙후된 지 역에 대한 지원 -특정 품목 및 수 산 자 원 과 직접 연계되 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 득 보조 등	-긴급 경영자 금 지원 -수급안정 지원 -경영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개정안에 따른 긴급지원 제도의 신설 여부는 이러한 기존 재해 구제 및 경영지원 제도와의 역할 분담, 지원 대상간 형평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식업·내수면어업 등 수산업 전체 대상 지원 필요성,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⁷⁾

문 의 처
02)6788-5422

-
- 1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총허용어획량제도(TAC) 현황

- (추진근거) 「UN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EEZ 내 수산자원을 TAC 등 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보존·관리하도록 명시
- (해외사례)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 자국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TAC를 적용 중
 - * EU, 뉴질랜드, 미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도입·운영 중
- (국내현황) '99년에 4개 어종, 2개 업종에 **TAC 제도 도입** 후 점진 확대하여 '26년 현재 **19개 어종, 23개 업종에 적용 중**(1~3단계)

- (3단계/정착) 17종

대상어종		대상업종
해수부장관중	고등어류	· 대형선망
	전갱이	· 대형선망
	붉은대게	· 근해통발
	키조개	· 잠수기
	대게	· 근해자망, 근해통발
	꽃게	·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오징어	·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도루묵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갈치	·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채낚기
	참조기	·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삼치	·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	·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복합
지자체중	멸치	· 기선권현망
	개조개	· 잠수기
	바지락	· 잠수기
	소라	· 마을어업

- (2단계/연습) 11종

대상어종	대상업종
삼치	· 대형트롤, 외끌이대형저인망
기름가자미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	·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키조개	· 근해형망
고등어	· 소형선망
전갱이	· 소형선망
살오징어	·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조기	· 대형트롤
꽃게	·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붉은대게	· 연안자망, 연안통발
민어	· 대형트롤

- (1단계/시범) 1개 업종

대상어종	대상업종
전 어종	· 정치망

- **(TAC 설정)** 매년 어종별 자원상태를 고려,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ABC 내에서 TAC 설정

<TAC 설정 절차>

수산자원 조사·평가	평가결과 검토 및 확정	TAC 계획 수립	의견 수렴	계획 의결
국립수산과학원 ABC 추정	→ 워킹그룹, 전문위원회 ABC 검토 및 확정	→ 해양수산부 TAC 시행계획 초안 수립	→ 해양수산부 시행계획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중앙수산자원 관리위원회 TAC 심의·결정

- **(TAC 배분)** 매년 해양수산부는 시·도별로 물량을 배분(6월)하고, 시·도는 어선별로 TAC를 최종 할당 후 1년간 운영(7월~익년6월)

<TAC 운영 절차>

시·도별 배분	어선별 배분	어획량 보고	소진량 관리	TAC 운영
해양수산부 전체 TAC를 시도별로 배분	→ 11개 시·도 어선별로 TAC 할당	→ 어업인(어선) 어획보고, 지정판매장소 판매 등	→ 한국수산자원공단 TAC 모니터링(조사원) 및 결과 보고	→ 해양수산부, 11개 시·도 유보, 전배 및 초과어선(지자체) 관리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